## KOSHA GUIDE

C - 49 - 2012

- (4)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가)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네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길이가 명시되어야 한다.
- (다) 안전블록의 줄은 로우프, 웨빙, 와이어로우프이어야 하며, 와이어 로우프 인 경우 최소공칭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.
- (5)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가)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 네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직구명줄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나) 추락방지대와 안전그네간의 연결 죔줄은 가능한 짧고 로우프, 웨빙, 체인 등이어야 한다.
- (다) 수직구명줄에서 걸이설비와의 연결부위는 훅 또는 카라비나 등이 장착되 어 걸이설비와 확실히 연결되어야 한다.
- (라) 수직구명줄은 유연한 로우프 등이어야 하며 구명줄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림에 의한 추락방지대의 오작동을 막기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팽팽히 당겨져야 한다.

## 7. 안전대의 사용

- (1) 안전대의 착용은 다음에 정하는 착용방법에 따라야 한다.
- (가) 벨트는 추락시 작업자에게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고 추락저지시 발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요골 근처에 확실하게 착용하여야 한다.